

제 261 회 거창군의회 임시회

제1차 총무위원회(2022. 1. 24.)

조례안 검토보고서



총무위원회

[전문위원 김진식]

목 차

1	거창군 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	1
2	법령 인용조문 및 조직개편 등 일괄정비를 위한 거창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	5

거창군 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검토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22. 1. 4.

나. 제출자 : 최정환 의원 대표발의

(최정환·김종두·심재수·권재경·이재운·김향란·
표주숙·이홍희·신재화·박수자 의원)

다. 회부일자 : 2022. 1. 10.

2. 제안이유

- 거창군의 다양한 교육수요를 반영한 교육여건 개선과 공감하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거창군 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명품 교육도시 거창군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가. 설치 및 기능에 대해 규정(안 제2조)

나. 협의회 구성에 대해 규정(안 제3조)

다. 임기 및 위원장의 임무에 대해 규정(안 제4조, 안 제5조)

라. 회의에 대해 규정(안 제6조)

마. 위원의 해촉에 대해 규정(안 제7조)

바. 실무분과위원회에 대해 규정(안 제8조)

사. 의견의 청취에 대해 규정(안 제9조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 제28조·제130조

나. 예산조치 : 필요시

다. 합 의 : 기획예산담당관, 인구교육과

라. 기타사항

1) 규제심사 : 해당사항 없음

2) 입법예고

가) 예고기간 : 2022. 1. 6.~1. 11.

나) 예고결과 : 의견 없음

3) 비용추계서 : 해당사항 없음

4) 성별영향평가 : 해당사항 없음

5.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다양한 교육수요를 반영한 교육여건 개선과 공감하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「거창군 교육발전협의회」를 설치·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
- 민·관·학 협력을 통한 거창군 교육발전 방향 및 정책의 연구·제안과 교육개선 사항 등을 협의·조정·자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명품 교육도시로의 거창군 발전을 위해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
- 일반적인 조례 조문과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 법령에 따라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

● 관련법령 발췌

□ 「지방자치법」

[시행 2022. 1. 13.] [법률 제17893호, 2021. 1. 12., 전부개정]

제13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)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지방자치단체의 구역, 조직, 행정관리 등
가.~카. (생략)
2. 주민의 복지증진
 - 가.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
 - 나. 사회복지시설의 설치·운영 및 관리
 - 다.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
 - 라. 노인·아동·장애인·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
 - 마.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·운영
 - 바.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
 - 사. 묘지·화장장(火葬場) 및 봉안당의 운영·관리
 - 아.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
 - 자. 청소,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
 - 차.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
3. 농림·수산·상공업 등 산업 진흥
가.~하.
4.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·관리
가.~더.(생략)
5. 교육·체육·문화·예술의 진흥
 - 가. 어린이집·유치원·초등학교·중학교·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·운영·지도
 - 나. 도서관·운동장·광장·체육관·박물관·공연장·미술관·음악당 등 공공교육·체육·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
 - 다. 지방문화재의 지정·등록·보존 및 관리
 - 라. 지방문화·예술의 진흥
 - 마. 지방문화·예술단체의 육성
6.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
 - 가. 지역 및 직장 민방위조직(의용소방대를 포함한다)의 편성과 운영 및 지도·감독
 - 나. 지역의 화재예방·경계·진압·조사 및 구조·구급
7. 국제교류 및 협력
 - 가. 국제기구·행사·대회의 유치·지원
 - 나.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·협력

제28조(조례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.

제130조(자문기관의 설치 등) ①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(소관 사무에 대한 자문에 응하거나 협의, 심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, 위원회 등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② 자문기관은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기능과 권한을 넘어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자문 또는 심의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③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·절차,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다만,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둘 수 있는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·절차, 구성 및 운영 등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④ 지방자치단체는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성격·기능이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·운영해서는 아니 되며,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자문기관 정비 계획 및 조치 결과 등을 종합하여 작성한 자문기관 운영현황을 매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□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

[시행 2022. 1. 13.] [대통령령 제32223호, 2021. 12. 16., 전부개정]

제78조(자문기관의 설치요건)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자문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.

1. 업무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
2. 업무의 성질상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

제79조(자문기관의 구성) ① 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자문기관은 설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데 필요한 인원으로 구성한다.

② 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자문기관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하고,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.

법령 인용조문 및 조직개편 등 일괄정비를 위한
거창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검토경과

- 가. 제출일자 : 2022. 1. 7.
- 나. 제출자 : 거창군수
- 다. 회부일자 : 2022. 1. 10.

2. 제안이유

- 법령의 제정·개정·폐지와 중앙·거창군 조직개편에 따른 내용이 제 때에 반영되지 못해 시행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조례상 인용 조문이나 용어 등을 일괄정비하여 이를 바로잡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가. 일괄개정 조례 조문 : 57개
- 나. 내용
 - 1) 상위법령 개정으로 인한 인용조문 및 용어 변경
 - 2) 기본조례 개정으로 인한 인용 용어 변경
 - 가) 거창군정조정위원회 조례 ⇒ 거창군 군정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

- 나) 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⇒ 거창군 위원회 수당과
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
- 다)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⇒ 거창군 사
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
- 3) 중앙 또는 거창군 조직개편사항 반영
 - 가) 실과, 기획감사실 ⇒ 담당관·과, 기획예산담당관
 - 나) 진주보훈지청장 ⇒ 서부보훈지청장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 제28조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
- 다. 합 의 : 부서 합의
- 라. 기타사항
 - 1) 규제심사 : 해당사항 없음
 - 2) 입법예고
 - 가) 예고기간 : 2021. 12. 28.~2022. 1. 6.
 - 나) 예고결과 : 의견 없음
 - 3) 비용추계서 : 해당사항 없음
 - 4) 성별영향평가 : 해당사항 없음

5. 검토의견

- 법령의 제정·개정·폐지와 조직개편 등에 따른 조례상 인용
조문과 용어 등을 일괄 정비하여 상위법과의 일치 및 조례
운영의 정확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

- 상위법 개정에 따른 「거창군 제안제도 운영조례」 등의 일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
- 일반적인 조례 조문과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

관련법령 발취

□ 「지방자치법」

[시행 2022. 1. 13.] [법률 제17893호, 2021. 1. 12., 전부개정]

제28조(조례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.

